직무관련자에 대한 청렴행동지침

제정 2007.07.25 개정 2011.03.24

- 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관련자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행동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 범위 및 직무관련자의 정의)① 이 지침은 한국가스기술공사의 모든 직원에게 대하여 적용한다.
 - ②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직무관련자라 함은「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 행동강령」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관련자를 말한다.<개정 2011.03.24>

※ 직무관련자

-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(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)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- 공사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 - 감사·감독·검사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
 - 결정·감정·시험·사정·조정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
 - 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
 - 공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, 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
 -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
 - 그 밖에 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
- 제3조(행동지침) ①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은 직무관련자를 대하는 경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 위를 유지하여야한다.
 - ②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유흥주점 등에 출입하거나 향응·접대를 하거나 받지 아니한다.<개정 2011.03.24>

※ "유흥주점 등"

○ 룸싸롱, 단란주점, 안마시술소 등 주류를 판매하거나 접대부가 고용된 사회통념상 향락 업소를 의미

※ "출입, 향응·접대"

- 직무관련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는 물론, 각자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유흥주점 등에 직무관련자와 함께 출입하는 것을 금지
- ③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은 직무관련자와 원칙적으로 식사(식대대납 행위를 포함)를 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외부에서 간소한 식사를 할

수 있다.<개정 2011.03.24>

※ "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"

- 장시간의 업무협의 등으로 식사시간이 요구되는 경우
- 행사, 회의 등 공식적인 업무로 식사 계획이 포함된 경우 등
- * 당해일자의 업무와 관계없이 미리 식사약속을 하는 행위 금지

※ "간소한 식사"

○ 구내식당이 운영되지 않거나 이용시간 제한 등의 현실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인근 외부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소액의 식사

※ "식대 대납 요구가 금지되는 행위"

-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이 부담해야 하는 1회 이상의 누적된 식사대금을 직무관련자에게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(금액 또는 장소를 알려주는 행위 포함, 구내식당을 포함)
- ④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은 직무관련자와 함께 골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 공적 목적 등을 위해 신고한 경우에는 가능하며 신고방법 및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.<개정 2011.03.24>

※ "신고 후 허용되는 골프"

- 직무수행과 관련된 의견교환 등 공적 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
- 신고는 승인 허가 등의 의미가 아닌 투명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절차를 의미

※ "신고 후 허용되는 골프"의 비용부담

- 신고한 후 직무관련자와 골프를 같이 하는 경우에도 비용은 각자 부담하여야 함
- 제4조(위반행위의 신고 및 징계·포상) ① 이 지침의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및 처리를 위하여 감사실에 『3절 불이행 신고센타』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는 별도로 정한다.
 - ② 누구든지 직원이 이 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『3절 불이행 신고센타』에 신고하여 야 한다.
 - ③ 이 지침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 - ④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공로가 있는 직원에게 포상 또는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제5조(청렴의식 확산 및 이행실태 점검) ① 윤리경영 주관부서에서는 제도개선, 교육 등의 자체 노력을 통한 청렴윤리의식의 확산과 지식경제부와 업무협력 증진방안 등을 연구하기 위해 노력하여 야 한다.<개정 2011.03.24>
 - ② 윤리경영 주관부서에서는 감사실 등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이 지침의 이행실태 등에 대한 감찰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

제6조(기타사항) ① <삭 제2011.03.24>

②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가스기술공사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른다.<개정2011.03.24>

부 칙

이 지침은 2011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 지】<삭제 2011.03.24>